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

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39

2023. 7. 21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7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제410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(2023년 7월 14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두환)

가. 제안이유

○ 도내 유망 창업기업 육성 및 기업 성장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2개 펀드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출자 목적

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 가능성 있는 도내 창업기업에 투자부터 육성까지 성장지원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여

○ 출자 근거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

○ 출자 내역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 출자

○ 기대 효과

-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투자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유망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
-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여 충북 창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「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」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제1호 및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제1항제14호 등의 법률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함.

나. 본 계획안은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마중물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,
도내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고,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판단되며,

다. 공공분야의 선제적 펀드 조성을 통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며, 충북의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발굴하고,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됨.

라. 다만, 본 출자 계획안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'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'의 시발점이 될 출자 계획이므로,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자금 회수전략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,

사. 장기적으로는 공익성(기업성장 지원)과 수익성(적정 수익률)이 조화를 이루고, 도비 외에 정부출자기관(모태펀드 등)과 민간출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

□ 출자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경제기업과 혁신창업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이혜란	김왕일	송은정	220-3342

사업명	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
출자대상	①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 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, 알파브라더스(공동운용사) - 유한책임조합원 : 충청북도 - 존속기간 : 2023년 ~ 2031년(8년) ※투자기간 4년 - 펀드규모 : 41억원(충청북도 40, 운용사 1) - 투자대상 : 충북도내 7년 이내 창업 기업 - 투자의무 : 펀드 조성액의 100% 충북 도내기업 투자 펀드 조성액의 60% 이상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 펀드 조성액의 60% 이상 1억 미만 투자 ②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한국벤처투자 - 유한책임조합원 : 한국모태펀드, 충북, 전북, 세종 - 존속기간 : 2023년 ~ 2031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 - 펀드규모 : 225억원 ・모태펀드(중기부) 200, 충북10, 전북10, 세종5 - 투자대상 : 초기 창업기업, 연매출 30억 미만 벤처기업 등 - 투자의무 :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액의 60% 이상 투자 중점투자지역에 조성액의 40% 이상 지역투자
출자 사업비	○ **출자 예정금액 : 5,000백만원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5,000)** ○ 출자 예정사항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출자기간	2023년
계		5,000
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펀드	2023	4,000
지역엔젤투자 재간접 펀드	2023	1,000

※ 펀드조성 일정 및 출자자 상황에 따라 연도별 출자액 변동 가능

출 자 필 요 성	○ 혁신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 및 농업,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, 육성 및 투자까지 연계한 성장지원을 통해 충북 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○ 공공분야의 선제적 펀드 조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역 내 투자활성화의 기초를 구축하여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
근거·법령	○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1호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 1. 벤처투자조합
지도감독 부서의견 (종 평)	○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는 조성액 100% 충북도내 창업기업에 투자하며 투자를 받기 어려운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 및 유치하여 충북 경제 활성화 이바지 ○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비율 비수도권 및 중점투자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충북도에서 일정액을 출자하여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 생태계 구축 ○ 창업기업을 위한 지역 내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 → 성장→ 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충북창업생태계 구축
첨부자료	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해당없음

2 출자금 요구 부서 검토 의견

○ 모험자금 및 기존 벤처펀드를 통해 지원받기 어려운 초기 창업자에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 조성으로 시드머니 지원

○ 지역 내 장기 지속 가능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의 선순환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

○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 창업기업 투자를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 마련

○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조성 예정인 2개 펀드에 대해 도 출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23년 하반기 50억원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3 펀드별 출자금 검토

❶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2023년 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**41**	**100**
LP(출자자)	충청북도	40	97.5
GP(공동 운용사)	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알파브라더스	1	2.5

❶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2023년 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**225**	**100**
LP(출자자)	충청북도	10	4.5
	전라북도	10	4.5
	세종시	5	2.2
GP(운용사)	한국벤처투자	200	88.8

※ 펀드조성 일정 및 출자자 상황에 따라 연도별 출자액 변동 가능

※ 운용사 출자 : 업무집행조합원(GP)은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위해 출자금 총액 1%이상 출자 의무

근거법령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(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)
4.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

1-② 출자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충청북도 펀드 출자금	구분	출자	5,000백만원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	출연	

□ 목적 및 필요성

○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도에서 마중물 투자를 실시하여 창업기업 자금난 해소 및 기반 마련

○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 가능성 있는 도내 창업기업에 투자부터 육성까지 성장지원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여

□ 출자개요

①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

- 운 용 사 :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, 알파브라더스(공동운용사)
- 존속기간 : 2023년 ~ 2031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
- 조성규모 : 41억원(충청북도 40, 운용사 1)
- 道 출자금액 : 40억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)
- 투자대상 : 충북도내 7년 이내 창업 기업
- 투자의무 : 펀드 조성액의 100% 충북 도내기업 투자
  펀드 조성액의 60% 이상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
  펀드 조성액의 60% 이상 1억 미만 투자

②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

- 운 용 사 : 한국벤처투자
- 존속기간 : 2023년 ~ 2031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
- 조성규모 : 225억원
  · 모태펀드(중기부) 200, 충청북도 10, 기타 15(전북10, 세종5)
- 道 출자금액 : 10억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)
- 투자대상 : 초기 창업기업, 연매출 30억 미만 벤처기업 등
- 투자조건 :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액의 60% 이상 투자
  중점투자지역*에 조성액의 40% 이상 지역투자

* 중기부에서 지역 엔젤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지역투자 대상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충북 중점투자지역 펀드 조성 예정

□ 산출기초

①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 출자 산출기초

- 조합원 출자약정 : 41억원
- 도 출자계획 : 40억원('23년 40억원)

② 지역엔젤투자 재간접 펀드

- 조합원 출자약정 : 225억원(모태펀드 200, 도10, 기타15)
- 도 출자계획 : 10억원('23년 10억원)

【 펀드별 출자약정 내역】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모태펀드 (국비)	도비	기타
계	266	200	50	16
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펀드	41	-	40	1
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	225	200	10	15

□ 기대효과

○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관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

○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지역 출자를 추진하는 펀드로 충북도에서 함께 출자하여 충북창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□ 출자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충북 창업 노마드혁신 펀드는 도내 성장가능성 높은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100% 투자하기 위하여 도가 직접 공고하고 운용사를 선정한 펀드로 미 승인시 투자를 받아 성장 할 수 있는 기회 소멸 및 혁신 창업기업 육성 지연

○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엔젤 투자활성화 및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만든 모태펀드(국비)에 도가 출자 약정한 사업으로 미 승인시 향후 충북도의 펀드 참여 어려움 발생

관 련 법 령

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
□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□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8.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4. 한국벤처투자조합

※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벤처기업법) 제4조제5항은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(벤처투자법) 제정('20.2.11.)으로 벤처투자법 제71조로 이관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